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 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다.

(계약기간)

①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 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에 의거 자기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인정유효기간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 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할 수 있다.

라.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료 및 이용자 비용 부담)

①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② 1.2등급: 재가 및 시설급여 / 3,4등급: 재가급여 / 5등급:인지활동프로그램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하여야 한다.

④ 등급별 한도액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한도액을 적용한다.

⑦ 재가급여(방문요양)급여비용

급여제공시간	수가	급여제공시간	수가
30분 이상	17,450	150분 이상	50,640
60분 이상	25,320	180분 이상	57,020
90분 이상	34,120	210분 이상	63,530
120분 이상	43,430	240분 이상	70,080

⑧ 재가급여(방문목욕)급여비용

분 류		금 액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내 목욕	88,990
	가정내 목욕	80,23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

⑨ 기초생활보장권자 및 의료급여자의 급여비용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하여 제공하고,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⑩ 급여대상자의 협의를 통해 제공서비스, 목표설정,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제공계획서, 서비스일정표)

⑪ 서비스의 계획이행과 이용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용자의 만족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서비스 제공기록지, 모니터 관리표)

⑫ 서비스 목표 달성 및 사망, 이주 등 종결사유 발생 시 그 보호자에게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사전고지 하고 자료관리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⑬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신원인수인에 관한 사항)

-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③ 인적사항 등의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⑤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⑥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⑦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신원인수 방법

- 1) 대상자의 거주지 가정

나.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1)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계약해지)

계약해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다.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 ① 서비스 제공자가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는 모두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한다.
- ② 서비스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기타 자연발생으로 인해 생기는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상해보험에 가입,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급여이용자의 책임 이행)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이용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 ① 장기요양기관과 사회복지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②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